

건축허가동의 및 사용승인 동의에 대한 순응도 조사 및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daptability Inquire & Promotable Method for "A Construction Permit Consent & Use Admission Consent"

이수경[†] · 하동명* · 김태환**

Su-Kyung Lee[†] · Dong-Myeong Ha* · Tae-Hwan Kim**

서울산업대학교 안전공학과

*세명대학교 안전공학과, **용인대학교 경호학과

(2002. 8. 5. 접수/2002. 9. 5. 채택)

요 약

정부는 지난 4년간 14,186건의 규제 중 8,121건(57.2%)을 폐지하고 6,065건(42.8%)을 개선하는 등 행정규제를 폐지·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규제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의 행태 변화가 뒷받침되지 못하거나, 이해관계 집단의 반발로 인하여 규제개혁 체감도는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앞으로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일반국민·기업·집행 공무원이 규제의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규제순응 관리대책을 마련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허가 동의 및 사용승인 동의"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자집단, 피규제집단,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행정 규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인정하고 준수하는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규제의 제고방안을 제시하여 소방행정의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government is propelling regulatory reform in priority that abrogate (8,121 an item in 14,186) improve (6,065 an item in 14,186) administrative regulation. But In spite of many regulatory reform results, successive diminution of regulatory reform is low because that modification of bureaucracy's execution don't support or a concerned group of gain and loss resists. In the future, regulatory reform must perform continuously promote. At the same time, the people, enterprises & public service manage diversified a regulatory adaptation countermeasure. In this study, grasp the present condition at A Construction Permit Consent & Use Admission Consent and would present the promotable method in analysis synthetically & systematically about cognizance, recognition & observance of a administrative regulation.

Keywords : Regulatory reform, Construction Permit Consent, Use Admission Consent

1. 서 론

본 연구는 규제순응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2002년도 규제 정비지침에 포함된 규제순응도 조사를 위한 조사 방법과 조사결과에 따른 규제순응관리 모델을 제시하

고 향후 규제정책 입안자들에게 규제정비 및 관리를 위한 행정규제의 분석틀을 제공하는데 이용되도록 본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허가동의 및 사용승인동의"에 관한 소방행정의 규제순응에 대해서 규제자집단, 피규제자집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행정 규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인정하고 준수하는지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규제의 제고방안을

이윤용 박사 정년퇴임 기념논문

[†] E-mail: lsk@snut.ac.kr

제시하고자 한다.

2. 건축물의 허가동의 및 사용승인 동의 현황

2.1 건축허가동의(협의 승인 포함) 전년대비 증감현황

소방행정 규제 준수도 조사 및 제고방안에 대해서 조사하기 앞서 건축물의 허가동의 및 사용승인에 대한 각종의 통계자료는 2002 예방 소방행정 통계자료집에서 이를 인용했으며 이를 제시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건축허가동의에 대한 2002년도 증감현황은 허가동의의 경우 29,777건으로 조사되었고, 준공의 경우는 16,091건으로 조사되었다. 건축허가 동의에 대한 증감현황을 보면, 허가동의의 경우는 3,635건이 증가되었고, 준공의 경우는 1,611건으로 나타났다.

2.2 2001 건축허가 동의(협의 승인 포함) 및 사용승인 현황

2001년도 건축허가동의의 29,285건 중에서 28,836건이 동의 처리를 받았고, 449건(1.5%) 만이 부동의 처리되

었다.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16,093건 중에서 16,026건이 사용승인처리를 받았고, 보완통보는 67건(0.41%)이 보완통보를 받았다.

2.3 건축허가동의 절차

신축 건축물에 대한 허가 동의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건축물의 신축시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을 갖추어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시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의한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되어 있는 지를 허가청(예 : 시, 군, 구청)에서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허가 동의여부를 통보한다.

이 민원 사무는 건축물의 허가를 받을 사람이 소방서장의 건축가동의를 받기 위하여 건축허가 서류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건축 허가청에서 관할 소방서장의 동의를 요구하는 행정사무(협조사무)입니다.

- (1) 근거 : 소방법 제8조 제1항, 동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별지 제1호의 3의 서식)
- (2) 행정기관의 심사내용(예방업무 처리규정 제34조의 18)
 - ① 건축허가동의요구서의 소방시설의 설치계획

표 1. 건축허가동의 전년대비 증감현황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증감		증감률	
허가	준공	허가	준공	허가	준공	허가	준공	허가	준공	허가	준공	허가	준공
24,542	16,405	11,444	10,301	16,640	9,878	25,642	14,480	29,777	16,091	3,635	1,611	14.18	11.13

표 2. 2001 건축허가 동의(협의 승인 포함) 및 사용승인

구분	총계	1호								2호	3호	
		연면적 400㎡ 이상	차고, 주차장 200㎡ 이상	승강기 식20대 이상	격납고	위험물 제조소 취급소	청소년 시설, 노유자 시설 연면적 200㎡이상	지하층, 무창층 중 150㎡ (공연장 100㎡이상)	가스 시설	지하구		
허가동의	소계	29,285	27,593	278	6	2	822	289	221	72	2	
	동의	28,836	27,174	276	6	2	807	283	218	68	2	
	부동의	소계	449	419	2	0	0	15	6	3	4	0
		1회	432	402	2	0	0	15	6	3	4	0
		2회	15	15	0	0	0	0	0	0	0	0
3회 이상	2	2	0	0	0	0	0	0	0	0		
사용승인	계	16,093	15,338	124	3	3	345	143	113	10	14	
	동의	16,026	15,273	123	3	3	345	143	113	10	14	
	보완통보	소계	67	65	1	0	0	0	1	0	0	0
		1회	67	65	1	0	0	0	1	0	0	0
		2회	0	0	0	0	0	0	0	0	0	0
		3회 이상	0	0	0	0	0	0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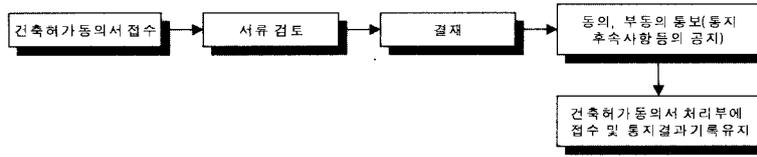


그림 1. 소방관서내의 건축허가동의 및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처리도.

표 3. 조사 설계도

구분	조사항목	조사대상집단		
		규제집단	피규제자집단	전문가집단
규제 인식도	· 행정규제 존재여부 인지도	-	○	○
	· 행정규제 내용에 대한 이해도	-	○	○
	· 행정규제 내용의 명확성(집행예측)	-	○	-
규제 인정도	· 행정규제의 필요성	○	○	○
	· 행정규제 수준의 적절성	○	○	○
	· 행정규제의 목적부합성	○	○	○
규제 준수도	· 행정규제 준수율	○(인지)	○(경험)	○
	· 행정규제 집행력	○	○	-
	· 행정규제 위반시 벌칙부과의 적절성	○	○	○

적정 여부심사

- ② 소방시설 설계업체 및 설계자 자격 적합 여부 심사
- ③ 위험물 제조소 등 허가대상 여부심사

(3) 업무 흐름도

(4) 위반시의 조치

소방관서장의 건축허가 부동의 처리시 건축 허가청에서는 건축허가를 할 수 없습니다.

2.4 설문 대상자의 선정

(1) 설문 조사 대상의 분류

설문 조사대상 분류는 다음과 같이 규제자 집단, 피규제자집단, 전문가 집단으로 분류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1) 규제자 집단

전국의 소방공무원들 중에서 건축물허가 동의 및 사용승인 동의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과 각 소방서의 방호과, 예방과 및 소방행정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2) 피 규제자 집단

전국의 소방서로부터 입수한 피규제자 집단인 건축주, 건설업자, 소방시설 시공업자를 주요한 대상으로 하고, 전국의 소방시설 공사업체, 1급 소방시설 설계감리업체, 소방시설 유지관리업체, 1급 방화관리자를

표 4. 평가결과 기준표

결 과 (%)	평가결과 기준
80이상 100이하	높 음
70이상 80미만	보 통
0이상 70미만	낮 음

포함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3) 전문가 집단

이 집단은 전문가 집단으로 이에 전국 소방기술사, 한국 소방안전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소방 전문가, 전국 소방관련학과 교수를 대상으로 규제 순응도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2.5 조사 설계도의 설계

조사 설계도에서 제시한 항목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설문을 실시하지 않고 각각 분류를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소방규제의 순응도 조사는 표 3의 조사방법 설계도를 기본으로 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2.6 조사결과의 평가

소방규제 순응도 조사를 위해서 분류한 규제자 집단, 피 규제자 집단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규제 인식도 조사항목, 규제 인정도 조사항목, 규제 준수도

조사항목에 대해서 설문을 실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 5와 같으며 표 4의 평가결과 기준표에 의하여 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제고방안을 제시한다.

2.7 설문 조사 항목별 평가

(1) 규제 인식도 조사항목

규제의 인지도 조사항목에서는 피 규제자 집단의 경우 67.26%, 전문가 집단의 경우 96.55%로 인지도가

상당히 높은 편으로 조사되었으나, 강화된 규제(청소년 시설 및 노유자 시설 신설, 소방시설 구비서류 추가)에 대한 인지도 조사에서는 홍보의 부족으로 인해서 피 규제자 집단의 경우 51.32%, 전문가 집단의 경우 64.5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추가된 규제가 적절하지 않은 이유 중에는 “동의 대상물의 면적, 용도에 따라 너무 세분화되었다.”, “강화된 규제에 의한 소방시설의 설치시 경제적인 손실 및 민원의 발생이

표 5. 규제 순응도 조사 결과표

구 분	응 답	결 과 (%)		
		피규제자집단 (N=226)	규제자집단 (N=111)	전문가집단 (N=87)
규제 인식도 조사 항목	인지도	① 인지 67.26% ② 비인지 30.97% ③ 무응답 1.77%	-	96.55% 3.45% 0%
	강화된 규제에 대한 인지도	① 인지 51.32% ② 비인지 46.9% ③ 무응답 1.78%	-	64.56% 35.44% 0%
	이해도	① 구체적인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 21.86% ② 대략적으로 알고 있다. 54.14% ③ 들어본 정도에 불과하다. 24% ④ 기타 0%	-	-
	내용 명확성	① 매우 명확하다. 12.06% ② 대체로 명확하다. 52.27% ③ 별로 명확하지 않다. 14.57% ④ 전혀 명확하지 않다. 4.02% ⑤ 모른다. 17.08%	-	-
	강화된 규제의 명확성	① 매우 명확하다. 14.75% ② 대체로 명확하다. 67.9% ③ 별로 명확하지 않다. 2.11% ④ 전혀 명확하지 않다. 11.57% ⑤ 모른다. 3.67%	-	21.52% 50.69% 6.46% 8.86% 2.47%
규제 인정도 조사 항목	필요성	① 반드시 필요하다 49.56% ②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 44.69% ③ 전혀 필요하지 않다 2.21% ④ 기타 0.44% ⑤ 무응답 3.1%	83.78% 16.22% 0% 0% 0%	42.53% 54.02% 3.45% 0% 0%
	규제의 수준 및 내용 적절성	① 규제의 내용과 수준 모두 적절하다 59.33% ② 규제의 수준이 적절치 못하다 26.1% ③ 규제의 내용이 적절치 못하다. 11.06% ④ 규제의 내용과 수준 모두 적절하지 않다. 2.2% ⑤ 무응답 1.31%	63.06% 17.11% 13.51% 6.32% 0%	60.92% 14.94% 10.34% 10.34% 3.46 %
	목적 부합성	① 현실적으로 맞는다 75.25% ②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24.75% ③ 무응답 0%	81.98% 18.02% 0%	77.01% 19.54% 3.45%
	효과	① 매우 도움이 된다. 26.5% ②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 62.78% ③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72% ④ 기타 0%	38.5% 59.42% 2.08% 0%	31.61% 64.59% 2.43% 1.37%

표 5. 계속

구분		결과 (%)			
		응답	피규제자집단 (N=226)	규제자집단 (N=111)	전문가집단 (N=87)
규제 준수도 조사 항목	행정 규제 준수율	①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13.93%	25.23%	10.34%
		②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	56.22%	73.87%	74.72%
		③ 별로 지켜지지 않는다.	29.85%	0.9%	14.94%
		④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0%	0%	0%
	준수 감시 기능 여부	① 현재의 집행력으로도 가능하다.	37.61%	32.43%	24.14%
		② 현재의 집행력정도면 적당하다.	41.15%	50.45%	37.93%
		③ 현재의 집행력으로는 불가능하다.	19.03%	14.41%	34.48%
		④ 기타	2.21%	0.9%	3.45%
		⑤ 무응답	1%	1.81%	0%
별척부과의 적절성	①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30.05%	35.14%	44.83%	
	②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8.42%	44.14%	35.62%	
	③ 벌칙(금)의 정도가 완화되어야 한다.	12.52%	4.97%	6.9%	
	④ 모름	8.01%	9.91%	9.2%	
	⑤ 기타	1%	0%	3.45%	
	⑥ 무응답	0%	5.84%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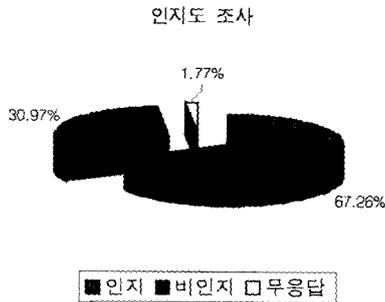


그림 2. 규제의 인지도 조사(피 규제자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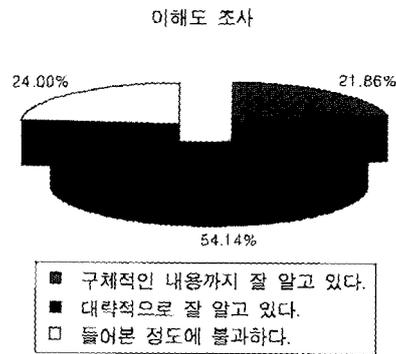


그림 4. 이해도 조사(피 규제자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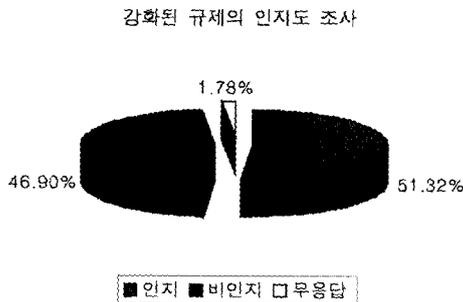


그림 3. 강화된 규제의 인지도 조사(피 규제자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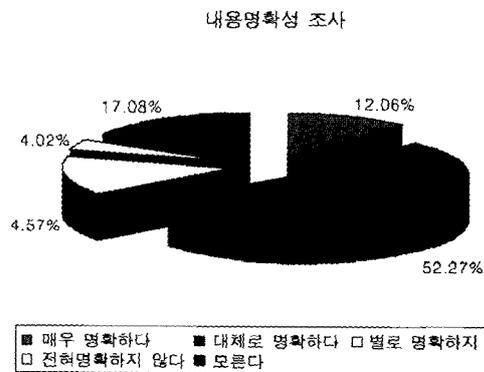


그림 5. 내용 명확성 조사(피 규제자 집단).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피 규제자 집단의 경우에 규제의 이해도는 76%정도, 내용의 명확성 측면에서는 64.33%로 매우 낮은 이해

도를 보여주었다.

(2) 규제 인정도 조사항목

규제의 필요성 조사항목에서는 규제자 집단의 경우에는 100%, 피 규제자 집단의 경우에는 94.25%, 전문가 집단의 경우에는 96.55%로 모든 집단이 대부분 높게 평가되었다. 규제의 수준 및 내용의 적절성에서는

규제자 집단의 경우 63.06%, 피 규제자 집단의 경우에는 59.33%, 전문가 집단의 경우에는 60.92%정도로 대부분 낮게 나타났다. 목적 부합성에서는 규제자 집단의 경우는 81.98% 높게, 피규제자 집단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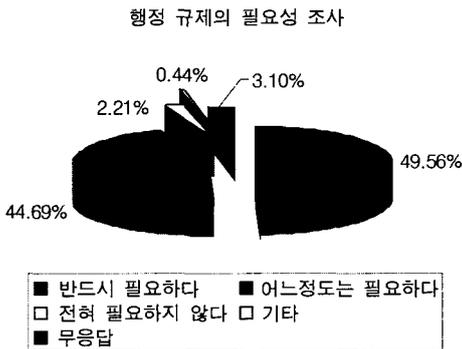


그림 6. 행정규제의 필요성 조사(피 규제자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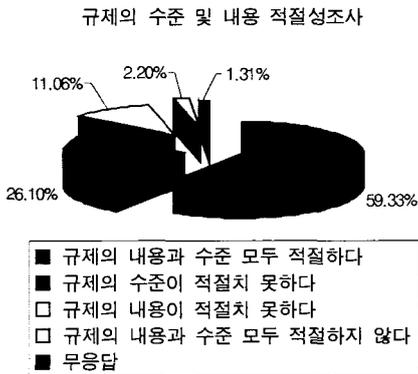


그림 7. 규제의 수준 및 내용 적절성(피 규제자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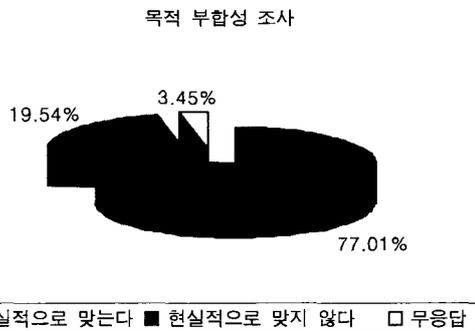


그림 8. 목적 부합성 조사(전문가 집단).

한국화재·소방학회, 제16권 제3호, 2002년

효과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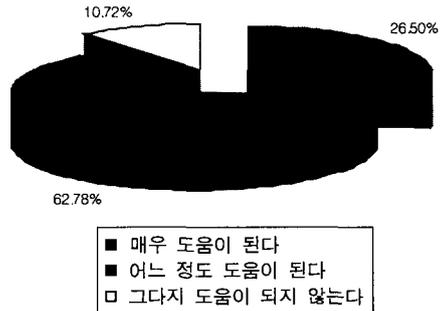


그림 9. 효과 조사(피 규제자 집단).

준수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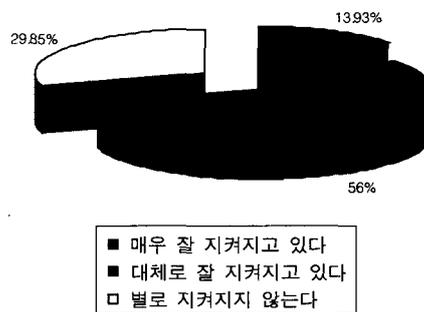


그림 10. 준수율 조사(피 규제자 집단).

준수율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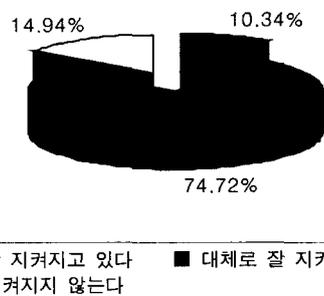


그림 11. 준수율 조사(전문가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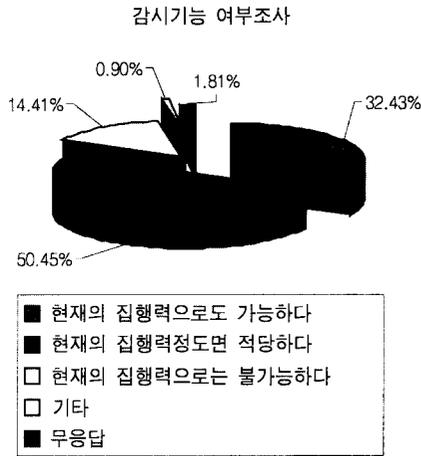


그림 12. 감시기능 여부조사(규제자 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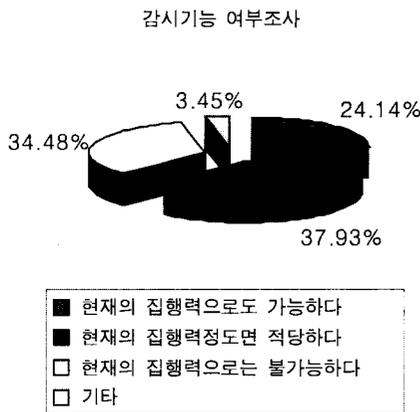


그림 13. 감시기능 여부조사(전문가 집단).

75.25%, 전문가 집단의 경우 77.01%로 각각 보통으로 평가되었다. 효과에 있어서는 규제자 집단의 경우는 97.92%, 전문가 집단의 경우 96.2%, 피 규제자 집단의 경우 89.28% 모두 높게 평가되었다.

(3) 규제 준수도 조사항목

행정규제의 준수율 조사항목에서는 규제자 집단의 경우는 99.1%, 전문가 집단 85.06%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피규제자 집단 70.15%로 보통으로 나타났다. 규제의 준수 감시기능여부에서는 규제자 집단의 경우는 82.88%, 피규제자 집단 78.76%, 전문가 집단 62.07% 정도로 현재의 집행력으로도 가능, 적당하다고 나타났다. 전문가 집단이 현재의 집행력의 보완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벌칙부과의 적절성에서는 규제자 집단 44.14%, 피규제자 집단도 42.78%가 벌칙(벌금)의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전문가 집단의 경우에 있어서는 벌칙(벌금)의 정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44.8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규제 순응도 조사 결과 규제의 인식도 항목에서는 전반적으로 보통으로 평가가 되었고, 규제의 인정도 항목에서는 행정 규제의 수준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행정규제로 인한 효과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규제의 준수도 항목에서는 전반적으로 높은 준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전문가 집단에서는 행정규제의 집행력이 미약하다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III. 결론 및 제고방안

건축허가 동의 및 사용승인에 대한 소방규제 순응도

표 6. 설문결과 판정표

구분	조사항목	평가결과		
		규제자 집단	피 규제자 집단	전문가 집단
규제의 인식도	행정규제 존재여부 인지도	-	높음	높음
	행정규제 내용에 대한 이해도	-	보통	-
	행정규제 내용의 명확성 (집행예측)	-	보통	-
규제의 인정도	행정규제의 필요성	높음	높음	높음
	행정규제 수준의 적절성	낮음	낮음	낮음
	행정규제의 목적 부합성	높음	보통	보통
	행정규제의 효과	높음	높음	높음
규제의 준수도	행정규제 준수율	높음	보통	높음
	행정규제 집행력	높음	보통	낮음
	행정규제 위반시 벌칙부과의 적절성	현 수준 유지	현 수준 유지	벌칙 강화

분석결과 소방규제의 인식도는 낮고, 규제의 인정도와 규제의 준수도는 높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건축 허가 동의 및 사용승인 동의”에 대한 소방규제 준수도 분석에서 부분적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에 대해서 규제 준수도 향상을 위한 제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1 ‘건축 허가 동의 및 사용승인 동의’ 담당 소방공무원(건축물 담당)의 기술 능력 향상

소방공무원의 방화시설 심사능력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적어도 방화시설에 관한 건축공무원에 뒤지지 않으며,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진 적이 없으므로 제대로 된 심사지침 한 권만 잘 만들어 내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2001년 건축허가 동의 및 사용승인 현황을 보면, 건축물 허가동의에서 부동산의 1.5%(449건), 건축물 사용 승인의 보완통보는 0.41%(67건)에 불과하다. 부동산의 및 보완통보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의 기술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겠다. 규제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거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담당 업무에 대한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

3.2 ‘건축 허가 동의 및 사용승인 동의’ 소방업무에 대한 홍보 강화

피 규제자 집단의 경우 규제의 인지도는 낮은 편(67.26%)이지만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준수가 높게(94.25%) 나타났다. 이는 규제의 내용이 너무 이해하기 어렵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규제의 내용에 대한 명확성, 적절성에 대한 준수가 낮게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건축업자, 건축사, 시공업자 등이 사실상 대항하는 현실에서 규제 내용의 적절성 및 내용 명확성,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규제자 집단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하겠다.

구체적으로 언론매체, 소방관련 단체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홍보가 필요하다. 사이버 공간 활용, 정보·기술제공, 교육기회 제공 등을 통한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에 대한 직접 참여유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아울러 “건축허가 동의 및 사용승인동의” 관련 민원서식을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하여 피규제자들이 쉽게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소방이라는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수행되어지는 모든 제반사항을 다루는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소방서에서 건축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이다. 따라서 건축허가동의 등에 대한 해설책자를 발간하여 건축 및 소방시설 설계

사무소, 건축담당 공무원 및 일반인에게 배포하는 것도 홍보의 한가지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3.3 규제준수도 향상을 위한 제도의 재정립 필요

소방법상의 건축허가 동의 제도에서 효용성이나 비경제성이 언급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소방시설만을 검토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건축법상의 방화에 관한 규정은 민원 편의적인 측면에서 건축법에 규정하도록 하고, 방화에 관해서는 전문행정청인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인데, 국내에서는 소방법령에만 적합여부만을 검토하고 건축법령(조례까지)은 검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그 취지가 변질되어 사실상의 효용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동의대상은 소방시설의 종류를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그 출발이 잘못되었으며 허가 규제를 받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방화에 관한 전문행정청의 입장에서 방화규제 사항을 검토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건축허가 동의시에 소방법과 건축법(명령 및 조례까지) 모두를 검토하게 함으로써 ‘건축허가동의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시행되어야 한다.

3.4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건축주의 소방안전의식 고취

건축주의 경우 소방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건축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설치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또한 현재의 인식은 소방시설의 설치는 단지 건축물의 준공을 받기 위한 부수적인 시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건축주들에게 소방시설은 인명 안전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 최초 건축허가 시부터 소방전문가 및 건축주가 참여하는 종합소방안전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또한 일반 건축물 등의 화재보험가입 시 소방시설별 등급을 정하고 등급에 따라 화재보험료의 할인 요율을 정하여 시행한다면 건축주의 자발적인 소방시설 설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축주 등 일반국민의 화재안전의식의 고취는 전반적인 소방규제의 준수를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민적인 개혁 운동과 함께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의 개혁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

3.5 규제수준 및 적절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

현재 건축허가 대상인 위험물 제조소등은 건축허가 동의과정에서 소방시설의 적용을 검토 받고 다시 위험물 제조소등의 허가 과정에서 재검토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중복적이고 비경제적인 규제는 건축허가동의 제도가 잘못 정립된데에서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건축주는 동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적인 민원업무는 건축사(소방시설 설계업체 및 시공업체) 등 관련업체가 업무를 처리하므로 건축주가 직접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3.6 건축허가 동의 처리업무의 일원화

건축허가 동의제도의 개선방향으로는 본래의 개념대로 건축법과 건축조례에 의한 명령 및 소방법, 건축법간의 처리 절차에 있어 건축법규와 소방법규가 일치되지 않는 규제가 다수 있으므로 양 법규의 조율이 필요하다. 특히 내화조치, 방화구획 등의 화재와 연관되는 법령들은 소방법으로 일원화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를 소방공사감리로 하여금 철저히 감독하도록 하여 방화 시스템 전반을 체계화시켜야 하겠다. 현재에도 논쟁이 되고 있는 소방공사감리자가 건축법령상의 방화구획까지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하겠다.

3.7 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성 강화

규제의 효과, 준수 감시 기능을 극대화시키기 위하

여, 소방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미 구축된 체계라면 보다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는 허가 담당 소방관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동의 및 허가에 있어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한국검정공사,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화재보험협회 등으로 하여금 협조를 얻어 철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행정자치부 소방국 예방과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행정자치부, “規制順應度 調査 및 活用 指針”(2002).
2. 2002년도 행자부 소방국 예방행정 통계자료집(2002).
3. 소방방재신문사, “99. 소방·방재”,(1999. 3. 5).
4. 김선진, “소방관계법규”, 기문당(2002).
5. 배도선, “신뢰성공학”, 아르케(1999).
6. 이장춘, “건축법규”, 성안당(2002).